

영등포구의회
제146회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 폐지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2009. 7. 2.

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
(專 門 委 員)

『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 폐지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신흥식 의원 외 7인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협의회 조례 폐지조례(안)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■ 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09. 6. 23.
- 제 안 자 : 신흥식 의원(외 7인)

■ 폐지(제안) 이유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5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체육진흥협의회를 두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으나, 조례 제정 이래 체육진흥협의회의 운영 실적이 전혀 없고 현재 우리 구에는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생활체육협의회가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진흥 관련활동을 실행하고 있어 별도로 체육진흥 협의회를 둘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.

■ 주요골자

- 1993년 12월 31일 「국민체육진흥법」이 개정되어 체육진흥 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제5조 규정이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, 우리 구는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폐지함.

■ 관련법규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5조

■ 타 자치단체 조례폐지 현황

- 동작구, 은평구, 구로구, 강동구 등

■ 검토의견

- 본 폐지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990년 3월 20일 조례가 제정된 이래 영등포구체육진흥협회의 운영 실적이 없고, 현재 우리 구에는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생활체육협회가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진흥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어 별도로 체육진흥협회를 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,
- 이미 서울특별시와 강동구 등 12개 자치구가 이 조례를 폐지 하였거나 당초에 제정하지 않은 추세 등으로 볼 때 이번 폐지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9. 7. 2.

보 고 자 : 이 남 식

【참고자료 : 관련 법령】

관 련 법 령

■ 국민체육진흥법

제5조 (지역체육진흥협의회)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